

#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09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8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자 : 김미경 의원 (찬성자 19명)
- 나. 제 안 일 : 2017년 4월 3일
- 다. 회 부 일 : 2017년 4월 5일
- 라. 상 정 일 :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7년 4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미경 의원)

#### 가. 제안 이유

-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의 어린이 및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대관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학술 행사 주최 이외에 체육활동을 추가함(안 제8조제7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현행 ‘어린이집,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’(이하 ‘대상 교육기관’)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바, 본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7항).
- 주 5일제 수업, 방과 후 활동의 강화,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 밖의 활동이 강화되고,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, 청소년시설의 대관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린이·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시설 이용을 쉽게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여짐.
-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수련관, 유스호스텔, 청소년 쉼터,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(조례 제2조, 제4조)로, 사용료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<sup>1)</sup>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단체 및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가<sup>2)</sup> 해당 시설을 사용할 때 부과·징수하고 있음.
- 2015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 한 바 있으며, 2016년 5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8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“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”에는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.

※ 본 조례의 제8조 제2항, 제5항, 제6항은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.

- 
- 1)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사용료 등)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, 강습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.
  - 2)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시설의 사용 등)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- 1.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
    - 2.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

<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감면>

조항	각 항에 정한 감면의 대상	감면율
제8조제2항	국민기초생활수급자·국가유공자·사회복지시설 거주·청소년복지시설 거주·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·장애인등록청소년	사용료의 100%
제8조제5항	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이용여성	사용료의 10%
제8조제6항	다동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이상인 청소년	사용료의 30%
제8조제7항	어린이집·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	대관료의 50%

-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, 서울시 전체 청소년시설의 연평균 감면손실분이 7백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청소년시설의 사용료감면 손실분의 보존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임.

※ 초·중·고등학교와 달리 체육시설을 건립 또는 운영할 공간적·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청소년시설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이러한 교육기관에 부족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시설 이용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본 조례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·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는 안전한 공간부족으로 외부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체육활동 대부분이 원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, 본 감면 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,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과 함께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시립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운영비의 일부만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, 나머지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청소년 활동의 진흥보다는 수익사업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경향과 함께 정원보다 적은 정규직을 채용하고, 정원 외 비정규직을 과다 채용하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바,

청소년 시설의 공공성 확립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 시설의 수탁기관이 운영비용의

부담 없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 청소년활동 중심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※ 감면대상 교육기관이 많으나, 사용실적의 저조한바, 청소년시설의 이용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.

〈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대관 사용료 현황(21개소) 〉

(단위:천원)

연번	수련관명	2015년		2016년		비고
		건수	대관료	건수	대관료	
소계		14	19,283	12	18,818	
1	서울	-	-	-	-	체육관없음
2	보라매	-	-	-	-	체육관없음
3	문래	-	-	-	-	체육관대관안함
4	목동	10	18,272	11	18,732	
5	수서	-	-	-	-	실적없음
6	노원	-	-	-	-	실적없음
7	중랑	-	-	-	-	체육관없음
8	강북	-	-	-	-	실적없음
9	구로	-	-	-	-	실적없음
10	성북	-	-	-	-	소체육관
11	동대문	-	-	-	-	실적없음
12	은평	2	400	-	-	
13	성동	-	-	-	-	실적없음
14	금천	2	611	1	86	
15	서대문	-	-	-	-	실적없음
16	창동	-	-	-	-	체육관없음
17	망우	-	-	-	-	실적없음
18	광진	-	-	-	-	체육관없음
19	마포	-	-	-	-	실적없음
20	화곡	-	-	-	-	실적없음
21	강동	-	-	-	-	실적없음

○ 또한,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감면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 있

으나, 감면분 전액을 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, 청소년 시설의 감면액에 대한 전액보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**<서울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손실분 보전현황>**

(단위:백만원)

연도	감 면				보전지원	미보전액	보전율
	합계	저소득	가임여성	다둥이			
2015	1,066	622	267	177	946	120	89%
2014	1,107	662	285	159	664	443	60%
2013	1,002	581	270	151	600	402	60%
2012	948	555	262	130	400	548	42%
2011	796	438	264	93	400	396	50%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**

**5. 토 론 요 지 : 없 음.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**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**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주최하기”를 “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용료 등) ① ~ ⑥ (생략)	제8조(사용료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<u>주최하기</u>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최하거나 체육활동</u> ----- -----